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한국국학진흥원 —

2025. 6.



□ 처분요구일람표

1.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주의)	1
2. 징계자 급여 지급 부적정 (시정)	3
3.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시정)	5
4.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시정)	7
5.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시정)	10
6. 기증물품 수령 시 기부금품법 절차 미이행 (주의)	12
7. 직원 가족상 조문 시 복무관리 부적정 (주의)	15
8.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주의)	18
9. 채용서류 반환 고지 등 부적정 (시정)	21
10.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24
11.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시정)	26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매년 직군별¹⁾로 등급을 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전연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장·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통보²⁾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매년 국학진흥원 총현원에 인원비율³⁾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산정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원 성과급 지급을 최종 확정⁴⁾하였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산정된 등급별 인원에 맞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도에는 S, A등급 인원을 각각 1명 더 배정하고 C등급 인원을 2명 적게 배정하였고, 2023년도에는 성과상

1) 별정직, 사무직, 전문직, 연구위원, 공무원

2)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3)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며,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4) 총무인사팀-****(****.**,), 총무인사팀-*****(****.**,), 경영지원본부-****(2024.**.**,)

여금 S등급에 1명 더 배정하고 A등급에 1명 적게 배정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S, A등급에 각 2명 더 배정하고, C급 인원을 4명 적게 배정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표]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단위 : 명)

연도	총현원	구분	S	A	B	C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인원(비율)
2022	71	실지급(A)	8	15	29	19
		지급기준(B)	7(10%)	14(20%)	29(40%)	21(30%)
		차이(A-B)	1	1	-	△2
2023	74	실지급(A)	16	21	22	15
		지급기준(B)	15(20%)	22(30%)	22(30%)	15(20%)
		차이(A-B)	1	△1	-	-
2024	75	실지급(A)	17	25	22	11
		지급기준(B)	15(20%)	23(30%)	22(30%)	15(20%)
		차이(A-B)	2	2	-	△4

※ 한국국학진흥원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직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과 달리 등급별 인원이 배정되는 등 성과평가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과등급별 인원을 배정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자 급여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인사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직원수당규정에 따라 직원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⁵⁾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인사규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활동비 및 지원비 지급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일반직원에게 연구활동비⁶⁾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고용노동부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6) 매월 15일 미만 근무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급여일에 지급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감봉을 받은 직원에게는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일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2024. 3. 5.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AAA, BBB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통상임금⁷⁾으로 계산하여 감봉기간 동안 급여 30,6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 징계자(감봉 3개월)에 급여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직	대상자	실 차감액 ⁸⁾ (A)	정당 차감액 ⁹⁾ (B)	차액(C=A-B)
계	2명			30,600
△△△○급	AAA	284,760	303,120	18,360
△△△○급	BBB	248,520	260,760	12,240

주1) A의 1일 평균임금(201,770원)이 1일 통상임금(202,08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당 차감액 산정

주2) B의 1일 평균임금(169,060원)이 1일 통상임금(173,840원)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당 차감액 산정

그 결과 징계자에 대한 임금이 정당하게 차감되어 지급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AAA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임금 30,600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7)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되며, 상여금, 숙직수당, 출장비, 초과근로수당, 업무활동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8) (연구활동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8시간×3개월)×1/2
 9) (연구활동비를 포함한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을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8시간×3개월)×1/2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¹⁰⁾을 퇴직금¹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해석¹²⁾에 따르면 상여금(명절상여금 포함)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0)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1)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일수/365

12)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17(2017. 2. 15.)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명절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을 산정을 위한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AAA 등 3명에게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12개월로 나누어 반영하지 않고 전액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지급하였다.

[표] 퇴직급여 지급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성명	근로기간	실 지급액(A)	정당 지급액(B)	차액(C=A-B)
계				281,850
AAA	2022.12.1.~2024.10.31.	5,214,140	5,120,190	93,950
BBB	2022.12.1.~2024.10.31.	4,895,280	4,801,330	93,950
CCC	2022.12.1.~2024.10.31.	4,415,180	4,321,230	93,950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달리 과다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AAA 등 3명에게 과다 지급된 퇴직급여금 281,850원은 회수하시고,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소속 직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1. 연구년 직원 복무 관리 소홀

한국국학진흥원 「인사규정」 제75조 및 「한국국학진흥원 연구년 운영세칙」 제3조에 따르면 원장은 연구직 및 직원의 연구수행 등의 근무부담 경감하고 개인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6개월 또는 1년 기간으로 연구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세칙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연구년 대상 직원은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되어 있고, 정액급식비 및 직책업무추진비 미지급, 연구활동지원비 60% 지급을 제외하고는 보수·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규정」 제21조에 따르면 소속 직원의 휴직·정직·직위해제·강등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연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가원을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년 직원은 해외 관광 등 사유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없을 때에는 연가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고, 연구년 직원이 사용한 연가일은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연구년 직원의 근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AAA 등 2명은 연구년 기간 중 관광 목적으로 출국하고서도 연가사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연가사용일수도 차감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년 직원 해외 출입국 내역

직	성명	연구년 기간	해외 출입국	연가승인	연가일수 차감
○○○○○○○	AAA	2023.7.1.~2023.12.31.	2023.7.7.~2023.7.10. 2023.8.7.~2023.8.18.	부	부
○○○○○○○	BBB	2023.1.1.~2023.6.30.	2023.3.14.~2023.3.20.	부	부

2. 휴직자 복무 관리 소홀

한국국학진흥원 「인사규정」 제55조의2 에 따르면 원장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에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31일,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및 제55조의3에 따르면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 기간 중 임용권장에게 매 반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육아 및 가족돌봄 등 사유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휴직자로부터 복무상황을 보고받아 그 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휴직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 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휴직자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표 2]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 상황 이행 실태

직	휴직자	휴직 기간	휴직자 복무상황보고				복무상황 점검	비고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급	CCC	2024.4.1.~ 2025.9.30.	×	○	미해당	미해당	×	육아휴직
△△△○급	DDD	2024.1.1.~ 2024.7.31.	미해당	×	미해당	미해당	×	육아휴직
△△△○급	EEE	2024.2.1.~ 2024.6.30.	미해당	○	미해당	미해당	×	가족돌봄 휴직
△△△○급	FFF	2023.7.1.~ 2023.12.31.	×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	육아휴직
		2024.10.13.~ 2025.10.12.	미해당	미해당	×	미해당	×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해보면 연구원 직원에 연가 등 복리관리 개선이 필요하고, 휴직자의 연가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연구년 직원이 연구년 목적 외의 사정으로 연구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는 연가 등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고,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인사제도 등 운영 미흡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인사규정」 및 「직원평정규정」, 「직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직원의 승진 및 보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인사예고제 운영 미흡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고, 승진·전보 등 임용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인사요인(결원), 인사발령일 등 소속 직원의 승진, 이동 등 주요 인사계획을 포함하여 인사운용계획을 사전에 공지하여 인사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직원 승진과 관련된 인사방향 및 기준, 인사요인(결원) 등이 포함된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징계의 효력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 및 그에 따른 임금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고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정직 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국학진흥원 「인사규정」 제63조에서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6할을 감하여 지급하고 부가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를¹³⁾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결과 위 1, 2를 종합해 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가 달리 인사제도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징계자에 불이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인사방향 등이 포함된 인사예고제를 운영하시기 바라며,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징계자에 대한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3) 「직원보수규정」 제3조에서는 보수를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증물품 수령 시 기부금품법 절차 미이행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등 국학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기부”란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한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출자·출연기관이 행정목적은 수행하거나 설립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탁자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발적인 기탁예정자는 「기부금품법」상 법정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등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국학자료를 접수할 때에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로부터 사용용도와 목적이 기재된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아 경상북도 기부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해당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이 진흥원의 행정목적 내지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지를 사전에 심의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접수 후에는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0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93점의 기증물품(고서, 고문서, 목판, 현판, 서화 등)을 수령하면서 기탁자로부터 「기부금품법」상 지정기탁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기부금품 접수 담당 부서인 국학미래본부에서는 경상북도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기증물품을 수령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경상북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수 사실을 알리지 아니 하였다.

[표] 기증 목록 현황

기증자 개인정보로 미공개 처리

※ 한국국학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기부금품 접수에 있어 공적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국학자료의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고, 국학자료 기증의 적정성 여부를 접수 담당부서의 자의적 판단에만 의존함으로써 부적절한 국학자료의 기증 수령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가 없는 상황이 초래 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는 국학자료에 대한 자발적 기증 의사가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절차 및 통보·보고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원 가족상 조문 시 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복무규정」 등에 따라 출장은 업무를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는 직원은 출장명령부에 결재를 얻은 후 출장에 임하여 당해업무수행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업무 시에만 출장을 허용하고 있고, 소속 직원에 대한 경조사 시에 공무 출장처리(기관 대표자 자격의 조문 등)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소속 직원의 가족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무 시간 내에 사회상규상 동료 직원의 조문을 위한 목적으로 출장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적인 조문인 경우 근무 시간 내에는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 조문하게 하거나 근무 시간 이후에 조문을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관 대표 자격으로 공무상 출장처리가 필요한 경우¹⁴⁾에는 내부 복무규정에 소속직원 경조사 시 허용 가능한

14)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 가능하고,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

대표 자격의 인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정에 따른 경조사 출장의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붙임]과 같이 2022.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를 위한 출장이 아닌 동료 직원 가족상 조문 목적으로 동일 조문건에 최대 21명이 조문한 경우를 포함하여 총 99건을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직원 경조사 관련 출장 규정이 없는데도 허용함으로써 기관의 복무 규율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공·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기관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개인적인 경조사 참석은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연가 또는 근무시간 외 참석을 권장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조문 관련 출장 내역
“출장 관련 정보 미공개 처리”

※ 한국국학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 ○○○○○○(現,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한국국학진흥원 △△ 시스템 및 △△△△△△ 구매 설치” 사업을 AAA과 계약하였다.

[표] 한국국학진흥원 △△시스템 및 △△△△△△ 구매 설치 사업 개요

사업(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연장기간)	계약금액 (천원)	계약해지일 ¹⁵⁾ (부정당제재일 ¹⁶⁾)	계약해지사유
한국국학진흥원 △△ 시스템 및 △△△△△△ 구매 설치	AAA	'23. 5. 3. ~ '23. 7. 1. ('23. 5. 3. ~ '23. 8. 9.)	71,000	'23. 8. 25. ('24. 4. 1.)	계약미이행 및 선금보증보험 미연장

한국국학진흥원 「회계규정」 제48조에 따르면 국학진흥원의 계약에 관한 제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¹⁷⁾을 내도록 하여야

15) 재무회계팀-****(****. *. **) 나라장터 계약 해지일 : 2023. 8. 25.

16) 2024년 제72회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부정당제재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등 어느 하나의 사유¹⁸⁾가 계약 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¹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대상물품 공급사(총판)와의 물품공급 지연”을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 등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을 39일 연장하여 주었고, 결국은 AAA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인데도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연장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상대자 선정 등에 따른 물품공급이 지연되게 되었다.

17) 계약금액 x 지연배상금률(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0.08%) x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

1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된 경우,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된 경우

19)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준공)하지 않고 해지된 경우라면 지연배상금은 부과할 수 없고,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함.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연장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채용서류 반환 고지 부적정 등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한국국학진흥원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채용서류 반환 고지 및 파기 부적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하며,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국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 서류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구인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책임연구위원 등 12회에 걸쳐 총 7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180일이 경과된 10회 채용공고 중 확정된 채용대상자를 제외한 109명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다.

[표1]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고지 의무 및 파기 위반 내역

(단위 : 명)

연번	채용분야	채용공고 제목	총인원(명)		공고연월일 (확정연월일)	공고 번호	반환 고지	서류 파기
			응시자	합격자				
계			131	7				109
1	책임연구 위원	2024년 하반기 한국국학진흥원 직원(책임연구위원) 채용 공고	12	0	'24.11.15. ('24.12.17.)	2024-134	x	180일 미도래
2	전문7급	2024년 한국국학진흥원 경력직 (전기통신) 채용시험 계획 2차 재공고	4	1	'24.10.17. ('24.11.12.)	2024-118	x	180일 미도래
3	책임연구 위원	한국국학진흥원 직원(책임연구 위원) 채용 공고	8	1	'24.9.5. ('24.10.15.)	2024-103	x	x
4	사무6급	2024년 한국국학진흥원 경력직 (사무6급)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4	1	'24.8.14. ('24.9.10.)	2024-94	x	x
5	책임연구 위원	한국국학진흥원 직원(책임연구 위원) 초빙 공고	13	0	'24.5.28. ('24.7.5.)	2024-59	x	x
6	전문7급	한국국학진흥원 신규직원(통신 음향) 채용시험 계획 2차 재공고	2	1	'23.12.29. ('24.2.15.)	2023-145	x	x
7	전문7급	한국국학진흥원 신입직원(통신 음향) 채용시험 재공고	2	0	'23.11.24. ('23.12.28.)	2023-135	x	x
8	전문7급	한국국학진흥원 신입직원(통신 음향) 채용시험 계획 공고	4	0	'23.10.19. ('23.11.24.)	2023-125	x	x
9	전문7급	한국국학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시험 계획 재공고	1	0	'23.5.24. ('23.6.29.)	2023-75	x	x
10	전문6급	한국국학진흥원 신규직원 채용 시험 계획	8	1	'23.5.9. ('23.6.20.)	2023-67	x	x
11	책임연구 위원	한국국학진흥원 직원(책임연구 위원) 초빙 공고	19	1	'23.3.10. ('23.4.11.)	2023-32	x	x
12	전문6급 전문7급	한국국학진흥원신입직원 채용 시험 계획 공고문	54	1	'22.12.16. ('23.2.8.)	2022-177	x	x

주) 채용서류 미반환(개인정보 미파기) 대상자 : 109명

-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 경과된 채용 서류(115명) 중 확정된 채용대상자(6명)를 제외한 인원

2. 채용심사비용 부담 부적정

채용절차법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적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국학진흥원 경영지원본부에서는 채용시험 과정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받는 경우, 전담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지정 및 협약을 통하여 사전에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자기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을 환급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최종합격자 총 3명이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2]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현황

(단위 : 원)

연번	임용일	채용직급	성명	제출서류	검사비용	반환여부	비고 (검진일)
합계			3명		80,100		
1	'24.11.1.	○○○○○	AAA	채용신체검사서	40,000	부	'24.10.15.
2	'24.9.23.	○○○○○	BBB	채용신체검사서	35,000	부	'24.9.11.
3	'23.4.17.	○○○○○	CCC	채용신체검사서	5,100	부	'23.4.12.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자기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를 받은 AAA 등 총 3명에게 채용신체검사비용 80,100원을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직원수당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직원수당규정」 제3장 제7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공무원 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 변동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보수지급 기관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보수지급 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관 소속직원은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변동 신고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부터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96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가족수당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원)

소 속	성 명	부양 가족	실제 지급액	정당 지급액	오지급기간	과다지급액	과다지급사유
합 계						960,000	
○○○○○○	AAA	부	20,000	-	24개월 (2023.1.~2024.12.)	480,000	주민등록표상 세대 미전입
		모	20,000	-	24개월 (2023.1.~2024.12.)	480,000	주민등록표상 세대 미전입

※ 한국국학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960,000원은 지급받은 자료부터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 정산 부적정
소 관 청 한국국학진흥원
관 계 부 서 ○ ○ ○ ○ ○ ○
내 용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소속 직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복리후생규정」 제4장 제9조에 따르면 직원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기관에서 연도별로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로 구성²⁰⁾되어 있으며 적용기간 중 신규임용, 휴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등의 임용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해당 직원의 복지점수 사용권한에 변동이 발생한 경

20) △ 기본포인트 : 900포인트, △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 △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모 및 자녀 : 1인당 50포인트, △ 출산축하복지포인트 : 첫째·둘째 500포인트, 셋째 2,000포인트, 넷째 이상 3,000포인트(※ 1포인트 = 1,000원)

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복지점수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024. 9. 30. 퇴직한 직원 1명에 대한 복지점수 315,000원을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복지점수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소 속	성 명	퇴사일	당초지급액 (A)	연중근무기간 (B)	미정산액 (A*B/12)
○○○○○○	AAA	2024.9.30.	1,260,000	9개월	315,000

※ 한국국학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부적정하게 지급된 맞춤형 복지점수 315,000원은 지급받은 자료부터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